

우리 나라 金融機關의 金融慣行**

——은행과 제 2 금융권을 중심으로——

尹 桂 變*

『목 차』

- | | |
|----------------|---------------------|
| 1. 문제의 제기 | 6) 금융관행의 개선 |
| 2. 금융관행의 문제 | 4. 제 2 금융권의 금융관행 |
| 3. 은행의 금융관행 | 1) 제 2 금융권의 영업성격 |
| 1) 은행 금융관행의 특성 | 2) 제 2 금융권 금융관행의 특성 |
| 2) 꺽기 | 3) 금융관행의 유형 |
| 3) 당좌 대월상의 관행 | 4) 각 기관별 금융관행의 형태 |
| 4) 담보관행 | 5. 결 론 |
| 5) 記票慣行 | |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업과 정부의 시각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정책집행의 어려움과 함께 현실적인 수용태세가 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도와 현실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중에서는 그동안 형성되어 온 금융관행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와 같은 재무행태는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으나 금융의 자율화와 국제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과 정부가 같이 변혁을 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역시 과거 환경에서 형성된 금융관행에 대해서 쌍방이 다같이 책임을 가지고 보다 나은 관행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협준하는 금융관행의 형성과정과 관행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실」일 뿐이며,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관행은 이론에 닷던 안맞던 간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 본 연구는 다음의 여러 교수들과 공동연구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연구의 일부이다.
金東源(수원대), 朴尙用(연세대), 全春玉(성심여대), 허희영(함공대), 金熙錫(대구대)

에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의 자금책임자로서의 역할을 自認하고, 기업 역시 과거보다 개선된 재무행태를 형성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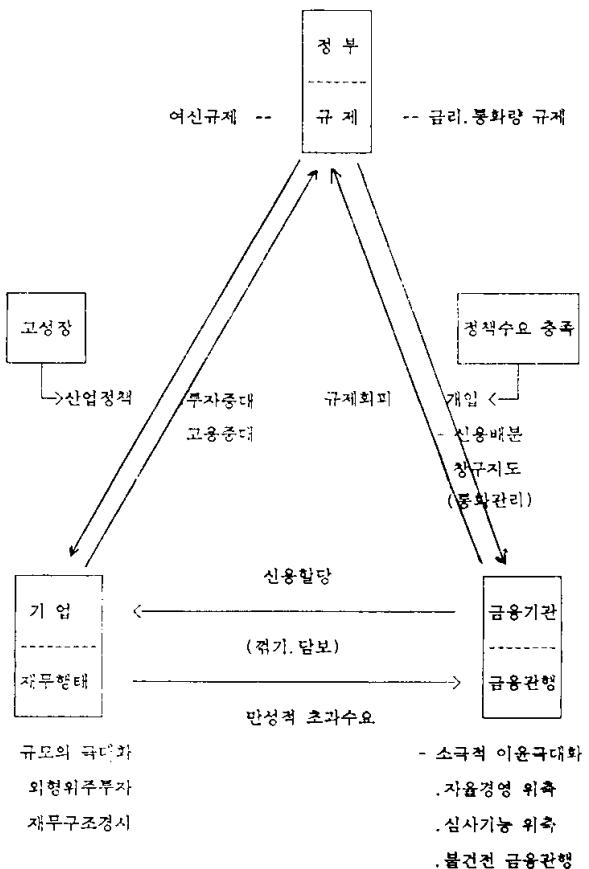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목표와 운용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소고의 목적은 금융기관에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 금융관행에 대해서 은행, 단자회사, 증권, 보험 등의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금융관행의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여 긍정적인 것은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 금융관행의 문제

금융관행이란 불완전한 거래규칙이나 부적합한 규제로 인한 금융거래의 제약을 극복하고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관례로 정착된 거래규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금융관계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으며 기업과 금융기관, 정책기관 사이에서 기업의 재무행태와 금융기관의 금융관행이 정부의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기업은 고속성장을 위한 외형위주의 투자를 통해 규모를 극대화 함으로써 규모경제를 누리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취약성과 낮은 수익률 등의 이유로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다른 자금조달보다 우선되므로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금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가 생기게 되므로 금융기관은 자금배분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꺾기, 담보와 같은 금융관행이 나타나게 되며, 다른 나라의 기존관행보다 더욱 심하고, 복잡한 금융관행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규제, 금리, 통화량규제와 같은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는데 따라 더욱 변모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이 부실하게 되고, 자율경영이 위축되는 문제를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용배분과 통화관리를 위한 창구지도를 지시하고 금융기관은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규제회피를 하게됨에 따라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성적 초과수요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정한 배분을 해야하는 금융기관은 정부정책을 수용하면서 각종 전전한 금융관행을 형성시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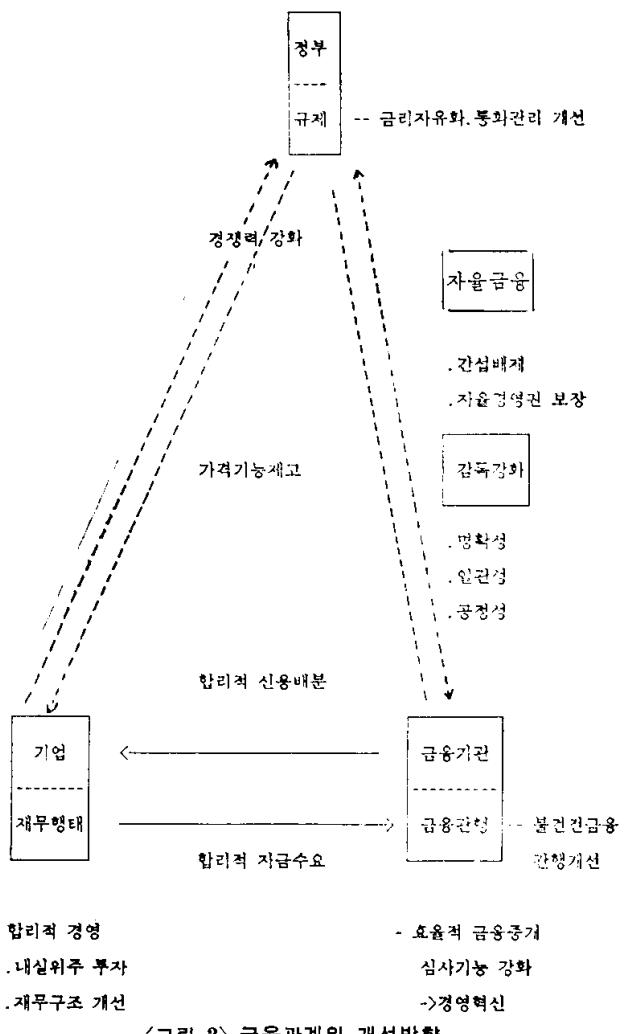
따라서 금융관행은 비록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형성되어 왔고, 이것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금융구조가 큰 문제없이 운행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거나 과거부터 진행되어왔던 통화금융정책기조가 변경된다면 기업금융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최근의 부도사태는 근본적으로 資金難이 원인 이지만 이와 같이 과거에 형성되었던 금융관행을 제거하는데서 일어난 부작용도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므로 전진한 금융관행을 개발하고, 부정적인 금융관행은 없애고 기업과 금융기관에게 다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관습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은행과 단자, 보험, 증권 등의 제2금융관행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전진한 금융관행이 정착되고, 정책이 변천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문제있는 금융구조는 그림 2와 같이 변모하게 될 것이다. 우선 기업측면에서 불황에 대비한 재무구조개선과 아울러 내실있는 투자를 통해 자금수요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은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심사기능을 강화



<그림 2> 금융관계의 개선방향

하여 기업의 자금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율금융이 정착되는 대신에 수익추구에 따른 상호간에 경쟁이 일어나게 되므로 금융기관은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금리자유화와 통화관리 개선을 하고, 금융기관의 자율금융을 유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 공정성, 명확성을 지켜 금융기관이 안정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된 금융관계구조로 향하는 운동은 우선 정부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이나 기업이 개선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이를 유도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에게 확실하게 정부의 정책의도를 인식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시장경제에 따른 가격기능이 제고되고 국제경쟁력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다시 정부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3. 은행의 금융관행

1) 은행 금융관행의 특성

은행은 지불결제서비스의 공급·통화관리대상·중심적인 금융중개기관 등 고유한 역할로 인하여 다른 금융기관보다 폭넓은 규제와 정부개입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예금자보호와 지불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규제는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은행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자체를 제약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따라서 주어진 규제환경 하에서 제약되는 금융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은행과 고객간의 규제에 의한 공식적인 거래규칙외에 새로운 거래규범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관례로 정착되게 된다. 이러한 공식적인 거래규칙외의 거래상 관례들을 금융관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은행의 금융관행은 규제와 시장여건 간의 간극을 해소함으로써 은행의 금융서비스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거래규칙을 대체하게 되므로 전전한 금융관행의 육성을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금융자유화와 개방화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은행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기존 금융관행의 개선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관행의 실태가 보다 확실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의연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2) 꺾기

(1) 꺾기관행의 문제

꺾기(양전예금)관행의 본질적인 성격은 보상예금으로 대출에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형태이며,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미국에서도 대출위험에 대한 담보적 보상, 은행에 대한 기여도 제고수단으로 기업대출의 통상 10%를 보상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세계적인 금융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꺾기가 문제되는 이유는 대출시장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하에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익극대화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관행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금리 · 여신규제 → 대출시장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 은행의 우월적 지위 → 꺾기 : 예금조달, 수익증대로 귀결되는 것이다.

꺾기에서 나타나는 은행과 차입자의 관계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의 보상예금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상예금 : 상호이익 보호, 차입자 이익에 합치(긴급시 대출, 대출금리우대), 은행에
는 수익증대보다 위험보상적 성격이 강함.

—꺾기 : 차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관행, 위험보상보다는 수익증대를
위한 규제회피수단

이러한 꺾기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부분적으로 인정함은 물론 은행 내부적으로 사실상 제도화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은행에서 작성하는 「고객별 기여도 분석」에 꺾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 꺾기의 대상과 유형

꺾기는 대출금의 종류, 고객과의 관계, 자금사정 등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 꺾기는 은행이 전액 자금을 부담하는 대출에 주로 적용되며, 한국은행 재할인대상 대출의 경우나 외부 기탁자금의 경우는 꺾기적용대상이 안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일반자금 대출과 일시대가 주된 대상으로 되어 있다. 꺾기의 기준 금리는 주로 회사채유통수익률이며, 은행의 자금사정이나 거래관계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데 꺾기로 인한 금리상승과 기업의 금리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一時貸에 대한 꺾기가 과도하기 때문이다(최고 100%).

모든 예금은 꺾기수단이 되나, 주로 단기자금의 경우는 보통예금, 당좌예금으로, 1년만기 대출은 정기예금, 적금, 저축예금으로, 그리고 사모채와 회사채 인수는 주로 CD가 이용되고 있다. 특히 CD발행한도는 사실상 비공식적인 꺾기한도와 같다. 꺾기유형은 다음과 같이 기본유형이 정리되나 경우에 따라서 더 복잡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예 1〉 대출금의 일부를 저축예금으로 만기까지 예치토록 하는 경우.

〈예 2〉 대출금과 연계하여 만기가 동일한 적금에 들도록 하는 경우.

〈예 3〉 대출금의 일부로 CD를 매입토록 하는 경우.

〈예 4〉 일시대 5억원을 대출할 때, 은행이 대출금을 8억원으로 하여 3억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토록 하는 경우.

〈예 5〉 일시대 5억원을 대출할 때, 은행이 대출금을 8억원으로 하여 3억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토록 하는 경우.

〈예 6〉 타입대를 대출하면서 금전신탁을 수취하는 경우.

〈예 7〉 5억원의 대출요청에 대하여 10억원을 신탁대출의 보증어음매입으로 대출하고 5억 원을 개발신탁에 예치도록 하는 경우.

〈예 8〉 기업의 대출한도가 소진되었을 경우, 은행이 단자사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이른바 “bridge-loan”).

〈예 9〉 당좌대출의 약정시 기업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정기예금을 수취하는 경우.

〈예 10〉 수출 대전의 일정기간 인출제한.

〈예 11〉 사모채의 경우, 전액에 대해 CD를 매입토록 하는 경우.

이러한 격기로 인한 통화지표의 왜곡문제 발생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창구지도로預貸相計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고 은행의 수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예대상계의 지시는 이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 당좌대출상의 관행

(1) 부도처리 관행

부도처리는 기업의 규모, 평소 거래관계, 정상화 가능성 등에 따라 일시대를 공급하여 부도의 발생을 막거나, 부도처리를 최대한 연장하고 있다.

〈예〉 1991년 7월 「아남정밀」의 경우 6월 28일 1차부도후 7월 6일에야 부도로 처리했음.

그리나 최근 한국은행의 지준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종래의 신축적인 부도처리의 관행이 크게 약화되고,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계기업을 부도처리하는 기준은 금융비용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업이 결제자금부족 상태를 일으키는 경우에 정상화 가능성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도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1990)에 의하면 제조업 평균 금융비용이 매출액의 5.7%이므로 10%는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당좌결제 자금부족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i) 결제시한 연장통보 : 단자사 할인거부로 은행의 자금지원 거부시 부도위기 발생.
- ii) 연장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 은행은 일시대 지원이 불가피.
- iii) 부도통보후 다음 날 「부도대전」을 어음교환소에 접수.

(2) 一時貸(일시당좌대출)

일반당좌대출의 한도를 소진하고도 결제자금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대출형태로서 시중자금난의 상황은 일시대의 증가로 직결된다.

이와 같이 만성적인 일시대 발생의 문제점으로는 : 1) 은행의 자금사정 교란, 2) 일반대출의 동결 초래, 3) 자금준비금부족 초래를 생각할 수 있다.

(3) 他入貸(타점권 입금에 의한 대출)

타점권을 당좌예금에 입금후 당일로 보증수표를 발행하거나 인출하여 결제자금을 충당하는 거래로서 일시대로도 충당되지 않는 결제자금 부족의 최종 해결방법이다.

일시대가 「동일인 대출한도」나 「당좌대월한도」의 적용을 받는데 비하여, 타입대는 은행의 「타점권」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편법적인 관행이다. 이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생타」: 거래은행 중 한 은행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다른 은행의 결제자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마타」: “맞교환타입대”, 은행 간 자금결제에서 어느 은행이 일방적으로 交換負에 빠지지 않도록 두 은행끼리 동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맞교환으로 입금시켜 결제자금을 충당하는 편법관행.

(4) 마감후 거래

본래 영업시간후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입금이나 지급을 말하는데, 예금계정에 수납되는 자기앞 수표 이외의 타점권은 마감후 입금처리함으로써 입금일의 예금증가로 인한 지준부담을 경감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4) 담보판행

은행의 내부규정 자체가 담보위주의 대출이 신용대출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보대출은 관행이라기 보다는 공식적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대출전결한도는 자금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점장(담보대출 3억, 신용대출 1억), 부장, 상임이사(신용대출은 대출한도의 50% 수준)순으로 많아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계 및 중소상거래자를 위한 자동대출」은 담보취득이 원칙이다.

(1) 부동산 담보대출

(2) 白紙手票

대출시 담보의에 별도로 담보용 백지어음(견질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청구하는 관행으로서 채권보전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은행 편의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이다. 은행감독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내규상 백지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채무자에게 청구토록 하고 있다.

(3) 人保證

대출시 물적 담보와 백지수표에 더하여 2인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으로서 고용임원의 연대보증 요구는 개선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은행에 따라서는 은행감독원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記票慣行

(1) 기표관행의 특성

흔히 정부의 금융지원시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은행의 기표관행에 있다. 창구의 책임자가 전표에 기표하지 않는 한 자금은 나가지 않으며, 책임자는 사고시 면책의 근거(담보 등)가 확실한 경우에만 기표하게 된다.

(2) 통화관리와 자금조달

현재의 통화관리방식은 창구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직접규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은행의 대출증가 추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대출억제를 창구지도로 하게 하며 이는 은행내 자금 조정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대출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은행과 고객 간의 관계손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은행영업이 고객지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은행본부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본부와 영업점간의 마찰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표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약속된 대출은 최대한 실행토록 노력함으로써 본부와의 마찰이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더욱 증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화관리가 「평잔」을 기준으로 하므로 은행의 기표도 가급적 資金積數를 줄이도록 월말에 집중 토록 함에 따라 기업의 자금결제도 월말을 위주로 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월말에는 자금이 항상 부족하게 되는 이유이다.

6) 금융관행의 개선

은행의 금융관행은 대체로 다음 두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1) 규제회피적인 금융관행으로 규제와 시장간의 상충을 해소하여 금융제도의 유기적인 운영에 順機能的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	은행의 관행	시장
• 금리 규제	꺾기	시장금리
• 통화관리	일시대 · 타입대	자금난

기표

(2) 規制順應的인 금융관행으로 규제제도를 이용하여 은행의 조직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착될 것으로 은행의 금융증개기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고객의 이익을 손상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운영에 逆機能的인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	은행의 관행	역기능
• 신용배분에의 정부개입	담보 · 보증	심사기능 저하 불공정 거래

앞으로 민간주도 경제운영체제의 구축, 금융자유화와 국제화 등 금융제도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증개의 효율성과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의 금융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지향적이고 순기능적인 관행은 정상적인 제도의 영역내로 흡수하여 은행 경영혁신의 추진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개선될 방향은

금리자유화.....→꺾기.....→정상적인 보상예금

통화관리의 간접규제.....→일시대·타입대.....→정상적 여신운영과 같다.

그리고 규제지향적이고 역기능적인 관행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신운용규정, 인사고과 등 은행경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4. 제 2금융권의 금융관행

1) 제 2금융권의 영업성격

제 2금융권(단자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로 한정함)은 효율적인 자금증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영역이 전문화되어 있으면서 설립은 물론 자금조달과 운영에 직·간접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단자회사는 전통적인 담보대출이 아닌 기업신용에 의하여 무담보 여신(어음할인)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손의 위험이 높아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높게 결정되고 있다. 제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하여 공신력이 낮고 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하지 못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또한 제 2금융권은 수신금리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수신고를 올리고 대출시 여신금리의 인상으로 그 손실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많은데, 이는 은행권보다 통화관리나 여신규제와 같은 각종 규제를 적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 2금융권은 조직체계, 자금운용상의 자율성과 융통성 및 금융상품의 특성 등으로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이 신속하며 상대적으로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은행권의 영업자세보다 적극적이다. 따라서 기업에게 신용을 담보로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해주나 수신과 여신에서 시장 실세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규제회피적인 금융관행이 자리잡게 되었다. 제 2금융권간은 물론 은행금융권과 제 2금융권 사이의 유사상품에 의한 경쟁이 격심하여 불건전 거래관행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예: 실적배당상품, 금전신탁, 투자신탁상품). 또 제 2금융권은 기업의 재무상태악화시 채권회수를 위해 신속하게 결제기구인 제 1금융권으로 전가시키고 있으며, 직간접으로 통화량, 이자율, 여신규제 등 금융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금융증개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불건전 금융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제 2 금융권 금융관행의 특성

제 2 금융권의 금융관행도 은행과 같이 여러가지 규제로 인하여 규제 회피적인 금융관행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리규제

단자회사의 수신상품(CMA 제외) 금리가 규제되고 있으며 어음할인은 자유화 되었지만 창구지도를 통하여 14%로 규제받고 있다. 그러나 시중 실세금리(채권수익률 18~20%)에 비하여 4~5% 차이가 나고 있다. 보험회사의 인수수수료율이 7%로 규제되고 있고, 91년 3월 이전의 시장 실세 인수수수료는 12~13%였다. 회사채 발행시 표면금리 13%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3년 만기 유통수익률은 17~19% 수준이다.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이자율은 (신용거래용자, 유가증권담보대출 및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13%이다. 보험회사대출 및 어음할인 금리가 자유화되었지만 실제에서는 창구지도를 통하여 12~14%로 적용하고 있다.

(2) 여신규제

— 단자회사

-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5%이내)
-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단자사는 자기자본의 40%이내, 종금사는 자기자본의 25%이내)
-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자기자본의 1배 이내)
- 순수어음증개시장을 통한 기업별 어음발행한도(A급은 자기자본의 40%, B급은 자기자본의 30%)

— 보험회사

- 동일기업 대출한도(총자산의 3% 이하, 총자산 1조원 초과시 300억 + 초과금액의 1.5%)
-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총자산의 5% 이하)
- 동일기업 신용대출(운용자산의 0.5% 또는 2억원 이하)
-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운용자산의 3% 이하)
- 어음할인(운용자산의 1%, 계열집단의 3% 이하)
- 투자—총자산의 5%

— 증권회사

-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 소유한도—자기자본의 60%
- 동일상장법인 발행주식 소유제한—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
- 계열회사 유가증권 소유제한—대주주 법인 계열회사

- 출자제한
- 사채보증제한
- 부동산 소유제한 : 자기자본의 50%이내 (600억 원 이상은 초과분의 20%)

(3) 외형경쟁요인

- 자본금 · 자산규모 등에 의한 업무영역이 제한되므로 외형경쟁을 하게 되고 증자를 촉진하고 있다.
- 자산운영규정에 따른 운용폭이 확대되므로 자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금융관행의 유형

(1) 규제순응적 관행

— 단자회사

- 회사채 발행시 인수단 참여금리차 보상요구
- 기업재무상황이 어려울때(악성풍문 등) 즉시 회수
- 추가담보 요구
- 점진적 회수로 할인한도 축소

— 증권회사

- 회사채 발행시 주간사 역할 수행

— 보험회사

- 회사채 인수—보상요구
-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시 담보 수취

(2) 규제회피 관행

대부분의 꺾기와 우회대출이 해당된다.

규제순응관행은 제 2 금융권이 제도적인 중개자로써 자신의 손실을 보상받거나 회피하려는 소극적 영업활동이다. 그러나 규제회피관행은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꺾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계수 경쟁을 위한 측면도 강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4) 각 기관별 금융관행의 형태

(1) 단자회사

(가) 꺾기 특성

기본적으로 단자회사의 꺾기는 은행과 동일하지만 금리체계와 업무내용이 단순하여 은행보다 그 운영의 폭이 좁다. 그러나 수신기능과 여신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사 은

행과 같은 영업내용으로 제 2 금융권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꺽기의 주된 대상은 기업어음과 자체 발행어음을 이용하고 있는데, 긴급한 자금사정으로 단자사 주도의 꺽기가 이뤄지며 꺽기율이 다른 금융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제도적으로 꺽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부분적으로 사금융업자와 연계될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이한 불건전 금융관행이 야기될 수도 있다.

(나) 꺽기 유형

〈예 1〉 어음할인을 해 주면서 시중 실세금리와 표면금리의 차이를 기업어음이나 자체발행어음을 매입하게 하여 보상 받는 경우.

〈예 2〉 기업으로 하여금 예상되는 자금소요시기 이전에 그 기업의 기업어음을 할인 해주고 그 자금으로 단자의 발행어음이나 기업어음을 매입하게 한 후 실제 자금소요시 어음 할인을 해주는 경우.

〈예 3〉 단자회사(A)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어음할인 대전을 자체발행어음으로 발행 교부해 주는 경우. 이 때 기업은 교부받은 단자어음을 다른 단자회사(B)에서 할인하게 되므로 할인료를 이중부담하게 되고 더우기 단자회사 (B)는 할인해 주면서 할인대금의 일부를 (B)사에 예치하게 함. 따라서 기업의 금리부담이 크게 높아짐.

〈예 4〉 실제의 어음할인의 취금없이 단자회사가 기업의 승인하에 여신과 수신 양쪽에 계수화하는 경우.

〈예 5〉 기업어음을 할인할 때 자체발행어음 또는 기업어음의 금리차이를 맞출 수 없으면 지급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할인해 주는 경우.

〈예 6〉 기업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일부를 발행어음이나 기업어음으로 양전하고서도 부족한 경우 CMA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

〈예 7〉 단자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 즉 어음 발행규모, 인수, 보증한도, 동일인, 계열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나 규제 등을 회피하면서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경우(우회대출).

〈예 8〉 기업의 회사채 발행시 기관투자자로써 인수단에 참여하면서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와 금리차이를 보상받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요자금 이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그 중 일부를 돌려받기도 함.

(다) 일반 여신관행

단자회사는 신용대출에 따른 대손위험에 대비하고자 엄격한 신용평가를 행하고 있는데 신용등급 결정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과 단자사 자체의 신용등급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은 참고자료로 이용할 뿐이다. 신용등급은 매우 보수적으로 결정되는데 신용평가는 1년 1회 이사회나 종합평가회의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대출(어음할인)에 소요된 시간은 통상 당일(한도내)이며 최장 5~6일을 초과하지 않아서 은행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이는 대출집행이 기업별 한도 내에서는 실무자가 자동적으로 집행하여 신속하기 때문이다.

(라) 채권회수 관행

무담보 신용대출이 주류이므로 대손위험이 상존하며 신용정보망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지급위험상황이나 부도사태가 나타나면 즉시 비치하고 있는 백지어음에 원금과 미수이자 등 회수금액을 기입, 교환에 돌린다.

만약 사태가 위험해지면 해결가능한 경우에는 담보요구하거나 할인금액을 축소운영하고 시장에서 악성루머가 퍼지고 있는 경우에 기업에 문의하지 않고 즉시 회수에 들어간다. 채권회수가 안전하지 않고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시 대출 중단이 곧 부도에 이르므로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씩 할인한도를 축소시켜가면서 사태를 분석하여 대비한다.

이러한 금융관행은 공정적 측면도 강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리규제나 각종 여신규제와 같은 금융시장에서의 자원배분기능에 대한 인위적 왜곡을 시정하여 시장기능화 한다는 점과 비대칭적 불완전 정보하에서 기업별 신용차이에 대한 금리차별화와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금융실정에서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부정적 측면으로서는 기업금리 부담 가중과 함께 복잡한 금융절차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2) 보험회사

(가) 꺾기 특성과 형태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의 60%가 대출이며 나머지는 유가증권과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고 대출규제, 자산운용규제 및 금리규제를 받음에 따라 꺾기 등 금융관행이 생겨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의 자산운용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면서 보험계약고의 확대가 곧 영업신장과 연결되어 생보사 업무의 종합금융화로 계수경쟁에 이기기 위한 변칙적 자산운용이 활용되고 있다.

꺾기의 유형과 비율은 계약과 신용정도 및 자금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업대출(운용대출 금의 70~80%임)의 경우 대출금의 일부를 보험가입 형식으로 보험사에 예치하는 경우(직접꺾기)와 은행 등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우회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조성하고 대출받는 기업이 그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보험사에 예치하는 경우(간접꺾기)가 있다.

〈예 1〉 개인대출의 경우 약정이자(14% 수준) 부담은 물론 월 2%(감독원은 1% 수준 유도)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는 경우.

〈예 2〉 기업 대출금의 일부를 종업원 퇴직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대비율 200%, 약정금리 14%, 대출금의 50%를 종퇴보험에 가입시킴(실효금리는 19.5%가 됨).

〈예 3〉 회사채를 인수해주고 종업원퇴직보험 가입증액만큼 대출해주는 경우 회사채를 발행금리 17%(표면금리+수수료)로 200억원 인수하고 약정금리 14%로 100억원 대출하면 총 300억 대출이 된다. (예대비율 300%) 이 때 종퇴보험 100억원을 가입시키는데 이 경우 실효금리 19.75%가 됨(신설사).

〈예 4〉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대출, 즉 타 금융권의 채권을 인수, 매도하고 그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의 일정율은 종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실효금리가 타 금융기관의 약정금리보다 높아짐.

(나) 꺾기와 대출금리

예대비율 100%이내(꺾기율 100%이내) 12~12.5%

(보험계약액/대출금) 150%이내(꺾기율 67%이내) 13%

200%이내(꺾기율 40%이내) 13.5%

200%초과 14%

(다) 대출과 담보관행

보험사의 대출은 철저한 위험관리로 엄격한 담보자산 감정, 대출비율의 보수성에 특징이 있고 대출(신용)이 주로 재벌기업에 폐증되나 감독원 지적시에도 뚜렷한 벌칙이 없다. (통안증권 인수규모확대에 한함)

신용대출시 개별기업의 법인입보(연대보증), 개인입보(대표이사, 소유주개인) 및 백지당좌수표로 청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통상 “상계각서”라는 종퇴보험해약 동의서를 받고 있고, 담보대출시 보증보험 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대출비율은 담보자산평가액의 60%수준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회사에도 각종 규제에 의한 변칙관행이 정착되어 있고, 의형(계수)경쟁에 의한 꺾기가 심하지만 수익성에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

자산운용규정이 의형경쟁을 초래하게 되어 있고 기업자금조달비용을 높이고 있지만 규제하의 효율적 차원배분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3) 증권회사

(가) 꺾기의 특성과 유형

증권회사의 꺾기는 주로 채권인수와 관련된 손익조정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다.

- 인수기관(주간사 제외)과 기관투자가에 대한 발행채권의 강제 매경
- 금융기관의 꺾기거래 은폐방법으로 증권사를 통한 채권거래
-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 증대 목적으로 우회거래에 의도적 참여

꺾기의 특징으로서는

- 수익극대화 목적도 중요하지만 약정(계수)경쟁이나 사후 인수주선업무의 정치작업 목적도 강함.
- 다른 금융기관보다 자금이동이 신속하고 實名化率이 낮아 규명이 곤란함
- 꺾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복잡

① 인수주선업무관련 꺾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예 1〉 회사채 인수시 Return 또는 Return된 채권의 업가 매입

〈예 2〉 가명구좌를 이용한 타 회사 채권매매시 실세금리 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

〈예 3〉 회사채 납입대금의 일부를 주간사의 BMF나 RP로 예치

〈예 4〉 회사채 인수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회사채 발행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발행사채를 인수하게 하고 이를 시장가격으로 매수하여 거래노출위험을 줄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차액만 정산

〈예 5〉 인수손실 보전을 위한 주식거래약정유치

〈예 6〉 인수·청약기관에 자금유치 주선

〈예 7〉 회사채 지급보증기관 지정

〈예 8〉 계열 투자자문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예 9〉 회사채 발행대가로 기업공개 요구

〈예 10〉 재벌계열 증권사간 동일계열사의 회사채 발행 교환방식(지급보증한도 초과시)

② 금융기관 요구에 의한 꺾기거래를 수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예 1〉 은행·단자 등으로 부터의 자금차입시 꺾기(요구불 예금, CD, 금전선택, CMA 발행어음 매입)로 받은 금융상품을 매입해서 다시 매각함.

〈예 2〉 조건부 불건전 채권매매—인수 기관투자가에게 위탁수수료 환불

〈예 3〉 보유상품의 통정매매—기관투자가 요구에 따름

〈예 4〉 은행의 「꺾기」중개—특수은행, 시중은행 등의 증권자회사가 금융채권 꺾기의 중개 회사로 역할을 함.

5. 결 론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은 정부의 정책적 규제로 인하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규제준용적인 것도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금융관행이 시간이 갈수록 정착되고 변질됨으로써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복잡한 금융관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의 금융관행이 변모되게 되면 기업의 재무정책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관행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중에서 좋은 금융관행을 육성하고, 나쁜 관행은 제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전한 금융관행의 형성을 위하여 정부나 한국은행, 기업, 금융기관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의 건전한 형성은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자금증개기능을 육성하고, 대출에 있어서 신속성과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부담금리를 낮추고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이룩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자율화되고, 국제화됨으로해서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금융관행이 생성될 가능성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종래의 금융관행은 규제해제와 함께 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진보적인 평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운계섭 외 기업의 재무행태와 금융관행. 미출간 1992. 6. 한국경제연구원.
2. 김동원, 은행의 금융관행, 발표논문, 1992. 6. 한국경제연구원.
3. 전춘옥, 단자회사의 금융관행, 발표논문, 1992. 6. 한국경제연구원.
4. 허희영, 보험회사의 금융관행, 미발표논문, 1992. 6. 한국경제연구원.
5. 운계섭, 증권회사의 금융관행, 미발표논문, 1992. 6. 한국경제연구원.
6.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